

	보 도 자 료		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	
	배포일시	2019. 12. 12(목) 총 6매(본문3)		
	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	• 과장 이중기, 사무관 노경우 • ☎ (044) 201-3855, 3858	
		환 경 부 교통환경과	• 과장 김영민, 사무관 김미노 • ☎ (044) 201-6920, 6928	
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기준처		• 처장 김용달, 차장 김호경 • ☎ (054) 459-7510, 7518		
	한국환경공단 운행차관리부	• 부장 이광욱, 과장 양일웅 • ☎ (032) 590-5187, 5191		
보 도 일 시		2019년 12월 12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2.11(수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민간 자동차검사소 부실검사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

-11월 197곳 특별점검 실시...불법개조위법차량 합격검사생략 등 37곳 적발
-20년부터 검사원 역량평가 등 부실검사 근절 위한 행정처분관리감독 강화

□ 정부가 불법명의대여·무자격검사 등 위반사항이 한 번만 적발되어도 자동차검사소 지정을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부실검사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에 적극 나섰다.

○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와 환경부(장관 조명래)는 전국 1,700여 개의 지정정비사업자*(이하 ‘민간검사소’)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97곳에 대해 ‘19.11.4.부터 11.28.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3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.

* 지정정비사업자: 자동차관리법 제45조(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)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사업자

○ 이번 점검은 지난해 수립한 불법·부실검사 방지대책(’ 18.11.21)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써 전국을 5개 점검팀으로 구성하여 민관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.

- **점검 대상**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*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하여 **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, 종전 합동점검 시 적발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를 중심으로 197곳**을 선정했다.

*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: 자동차의 검사장면 및 검사결과 등 검사 이력을 통합 관리 (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)

< 전국 권역별 점검팀 구성 및 점검 현황 >

구분	점검권역	참여 기관명	점검결과		
			점검 (A)	적발 (B)	적발률 (B/A, %)
총계			197	37	18.8
제1팀	서울·인천·경기북부	지자체, 한국교통안전공단, 한국환경공단	23	5	21.7
제2팀	강원·충북·경북	국토부, 지자체, 한국교통안전공단	40	6	15.0
제3팀	대전·세종·충남·경기남부	국토부, 지자체, 한국교통안전공단	57	2	3.5
제4팀	부산·대구·울산·경남	국토부, 지자체, 한국교통안전공단	38	4	10.5
제5팀	광주·전남·전북·제주	지자체, 한국교통안전공단	39	20	51.3

□ 점검대상 197개 검사소를 점검한 상세 결과는 다음과 같다.

- 불법·부실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**197곳**을 점검한 결과, 점검대상의 **18.8%인 37곳**을 적발했다.

* 2019년 상반기 합동단속('19.5.14~6.10): 217곳 점검 47곳 적발(적발률 17.3%)
2018년 하반기 합동단속('18.11.5~12.7): 286곳 점검 61곳 적발(적발률 21.3%)

- 주요 위반사항은 **매연검사 및 진단기검사 생략 등 검사항목 일부 생략 14건(38%)**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, 검사기기 관리미흡 10건 (27%), 기록관리 미흡 8건 및 검사시설·장비 기준미달 3건 등이다.

< 세부 위반사항 >

위 반 내 용		건수(건)	비율(%)
구분	세부 내용	37	100
검사항목일부생략	제원변경 미확인, 외관 및 기능 검사 일부생략, 불법개조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합격처리	14	37.9
검사기기관리 미흡	검사기기 교정, 측정기 누출시험 관리 부실	10	27.0
검사장면 및 결과 기록 미흡	전면 사진 인식불가(촬영상태, 카메라위치 부적정)	8	21.6
검사시설·장비 기준미달	지정기준(시설, 장비, 인력) 미달 상태로 검사시행 등	3	8.1
검사결과와 다르게 검사표 작성	다른사람 명의로 검사업무 대행	2	5.4

- 적발된 민간검사소 37곳은 검사소 지정취소*(1건), 업무정지(36건), 검사원 해임 (1건), 직무정지(33명)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.

* 불법튜닝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여 검사함으로써 합격 처리한 민간검사소에 대하여는 지정취소 처분 및 해당 검사원에 대해 해임 처분 조치

- 국토교통부 이종기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“올해부터는 특별점검과는 별도로 모든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통하여 3월부터 10월까지 193개 업체를 적발” 했으며,

* 교통안전공단 직원 3명이 전담하여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(VIMS)의 자동차검사 결과 및 검사사진 등을 상시모니터링하여 불법·부실검사 의심업체 적발

- “불법명의대여·무자격검사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하여 1회 적발 시 지정취소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(' 19.12.9 시행규칙 개정공포)하였고, 내년부터는 검사원에 대한 검사역량평가*를 실시하는 등 민간 검사소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” 고 밝혔다.

* 고의로 검사부적합사항을 만든 자동차를 공지하지 않고 검사를 신청하여 검사원의 부적합사항 발견률로 검사능력을 확인하는 평가방법

붙임 질의응답. 끝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자동차
운영보험과 노경우 사무관(☎ 044-201-3858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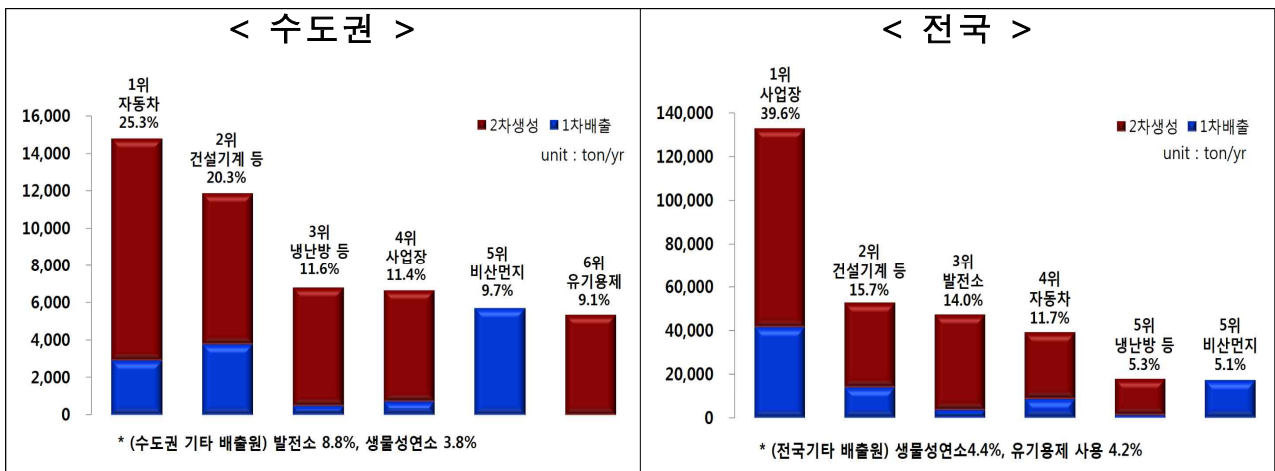
1. 이번 민간자동차검사소 특별 합동점검 실시 배경은?

- ☞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, 특히 대도시 지역은 도로 수송부문의 배출량이 높아 자동차 검사의 중요성이 큼
- ☞ 하지만 민간자동차검사소의 검사결과 조작, 검사항목의 일부생략 등 봐주기식 검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밝혀지고 있음
- ☞ 이에 우리부에서는 불법·부실검사 방지대책을 수립('18.11.21)하여 연 2회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

2. 자동차 배출가스가 국내 미세먼지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?

- ☞ 전국의 배출기여도*는 11.7%이며, 수도권에서의 배출기여도는 25.3%로 1순위 배출원임

* 전체 미세먼지 배출 원인 중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율



3. 자동차 검사의 종류와 검사주기는?

- ☞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로 구분되며 차종에 따라 6개월에서 2년의 검사주기에 따라 실시
- ☞ 종합검사는 수도권 및 인구 50만명 이상 지역에서, 정기검사는 전국적으로 실시(종합검사시 정기검사 생략)

4.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?

- ☞ 검사기간 경과 시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
* 자동차관리법 제84조, 시행령 별표 2
- ☞ 검사 명령 불응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*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2항

5. 민간검사소가 왜 부정검사를 계속하나?

- ☞ 민간 사업자 간 고객유치를 위한 과당경쟁으로 불법튜닝 묵인, 검사장비 측정값 조작, 검사항목 일부생략 등 부정·편법검사 만연
- ☞ 검사를 수익창출 목적으로 인식함에 따라 검사원 교육 소홀, 시설 개선에 소극적 대응 및 검사관련 규정을 알지 못해 부적합 판단을 못하는 사례 발생

6. 자동차검사소는 민간검사소 밖에 없나?

- ☞ 민간검사소(약 1,700여개소) 외에도 검사 대행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59개 본검사소와 39개 출장검사소 등 98개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음

7. 검사 불합격시 차량 소유주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?

- ☞ 검사기간* 만료일 이전에 불합격된 경우 만료일 이후 10일 이내에 정비·점검 후 재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함
- ☞ 검사기간* 외 불합격된 경우 불합격된 날 이후 10일 이내 정비·점검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함

* (검사기간)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

< 참 고 >

- ① (과태료) 검사기간 만료일(검사유효기간만료일 후 31일) 까지 불합격된 경우 이후 30일까지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, 30일이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시 마다 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됨
- ② (검사명령) 검사기간 만료일 이후 30일이 지난날(과태료 2만원 부과 시점)까지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9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 검사명령을 받게 되며, 검사명령에 불응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됨